

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[고촌 체육공원 조성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1년 07월 08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김포시 고촌읍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건립 민원 증가
-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촌물류단지 내 제35호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구분	물건 종류	단위	면적(㎡)	내역	부서명
취득	기타 (공작물)	식	15,582.7	□ 제목 : 고촌 체육공원 조성 · 소재지 :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67 · 취득규모 : 15,582.7㎡ - 축구장, 하프농구장, 체력단련장 · 사업비 : 1,900,000천원	체육과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고촌읍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숙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